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23
----------	-------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심상정 · 류호정 · 윤미향
강성희 · 이은주 · 박완주
홍기원 · 기동민 · 진성준
도종환 · 이소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이렇다 할 증빙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함. 검찰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물론 이는 검찰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제6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를 “범위·지급절차,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및 영수증의 서식 등에”로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이 경우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 <u>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 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방법 등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금지급. 이 경우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 하여야 한다.</u> ⑥ -----<u>범위 · 지급 절차,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및 영수증의 서식 등에</u>----- -----.
--	---